

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확인서

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1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에 대한 시험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합니다.

1. 시료내용

시료명	PM-04	신청자	대흥화학공업(주) 송탄1공장
접수번호	18-06-00012	시료채취장소	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64번길 68 대흥화학공업 송탄1공장
시료채취 일시	2018.04.12	접수일자	2018.04.12
시료채취 방법	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관련 지침	검사목적	확인검사
대상건축자재 [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] 접착제, [<input type="checkbox"/>] 페인트, [<input type="checkbox"/>] 실란트(sealant), [<input type="checkbox"/>] 퍼티(putty), [<input type="checkbox"/>] 벽지, [<input type="checkbox"/>] 바닥재, [<input type="checkbox"/>] 기타()			

2. 오염물질 방출 시험 결과

가. 검사결과 종합

판정	적합
기준 초과항목	없음

나. 항목별 검사결과

(단위 : mg/m² · h)

검사항목	기준	시험 결과
총휘발성유기화합물	2.0	0.757
톨루엔	0.08	0.008
폼알데하이드	0.02	0.002

※방법검출한계(mg/m² · h) : 총휘발성유기화합물 0.0023, 톨루엔 0.00013, 폼알데하이드 0.0009

한국 환경 산업 기술 원

